

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92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“노인복지회관”을 “노인복지관”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,
-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에 따라 “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으로 변경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 개정에 따라 “노인복지회관”이 “노인복지관”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「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」에서 『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』로 변경함.

나. 조문 중 「복지회관」 및 「회관」을 『복지관』으로 명칭을 변경함.

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)

다. 「도로명 주소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의 위치를 새주소표기방법에 따라 변경함(안 제2조).

○ 「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9번지(성어공원내)」 ⇒

『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(상록구노인복지관)』

○ 「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-9」 ⇒

『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(단원구노인복지관)』

라.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「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」를 『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』으로 변경함(안 제6조).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 임
- 관계법령발췌서 : 불 임
 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
 - 「도로명 주소법 시행령」 제3조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- 사전예고(예정)
 - 입법예고 : 2009. 10. 22 ~ 2009. 11. 11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 : 불 임
 - 현행 조례(전문)

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"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"로 한다

제1조 중 "안산시 노인복지회관(이하 "복지회관"이라 한다)"을 "안산시 노인복지관"이라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안산시 노인복지관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1. 상록구 노인복지관 :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(상록구노인복지관)
2. 단원구 노인복지관 :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(단원구노인복지관)

제4조 중 "복지회관"을 "복지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5조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6조 중 "복지회관"을 "복지관"으로 하고, "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"를 "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"으로 한다.

제7조 중 "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6조에 따라"로 하고, "복지회관" 및 "회관"을 각각 "복지관"으로 한다

제8조 본문 중 "각호의 1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"복지회관"을 "복지관"으로 한다

제9조 중 "회관"을 "복지관"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회관"을 "복지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4조의 규정에 의한"을 삭제한다.

제11조 중 "각호의 1" 를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13조, 제14조 및 제15조 중 "회관" 및 "복지회관" 을 각각 "복지관" 으로 한다.

제16조 중 "시행에 관하여 필요한"을 "시행에 필요한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장 박 용 덕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노인복지담당 김 용 선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은 (행정 3352)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<u>안산시 노인복지회관</u> (이하 "복지회관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안산시 노인복지관</u>
제2조(명칭 및 위치) <u>복지회관</u> 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. 1.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: 안산시 상록구 섬포동 589번지(성어공원내) 2.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: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-9	제2조(명칭 및 위치) <u>안산시 노인복지관</u> 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. 1. 상록구 노인복지관 :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(상록구노인복지관) 2. 단원구 노인복지관 :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(단원구노인복지관)
제4조(업무) <u>복지회관</u> 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8. (생략) 9. <u>기타</u>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	제4조(업무) <u>복지관</u>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그 밖에</u>
제5조(시설)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. 1. ~ 10. (생략) 11. <u>기타</u>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	제5조(시설)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그 밖에</u>
제6조(위탁운영) ①시장은 <u>복지회관</u>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. ②(생략)	제6조(위탁운영) ① <u>복지관</u> 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복지회관</u> 운영관리를 위탁받은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.	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제6조에 따라 <u>복지관</u> ② <u>복지관</u>
제8조(위탁의 정지등)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 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<u>복지회관</u> 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. ~ 4. (생략)	제8조(위탁의 정지등)각 호의 어느 하나....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복지관</u> 3. ~ 4.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9조(지도감독) ①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. ②(생략)	제9조(지도감독) ①.....복지관 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이용) ①안산시내에 거주하는 노인은 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 ②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.	제10조(이용) ①.....복지관..... ② <삭제>
제11조(이용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 관을 명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	제11조(이용제한)....각 호의 어느 하나..... 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사용허가)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	제13조(사용허가) 복지관.....
제14조(사용료) 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"별표"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.	제14조(사용료) ①복지관..... ②복지관.....
제15조(운영비 보조)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	제15조(운영비 보조) 복지관 복지관.....
제16조(시행규칙) ①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6조(시행규칙)①시행에 필요한.....